# 농림수산업 분야 혁신성장을 위한 **농신보 제도개선방안**

2018. 4. 10.

관계부처 합동

# 목차

I . 추진배경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
Ⅱ. 농신보 보증 현황 2
Ⅲ. 제도개선 과제 4
1. 창업지원 프로그램 개편 5
2. 新성장 분야에 대한 보증 확대 7
3. 농어가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 9
4. 기금운영의 효율성 강화 11
IV. 기대효과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
V. 향후 추진계획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
<참고> 농신보·신보·기보 비교 ('17년말 기준) ·········· 14

## Ⅰ. 추진배경

- □ 「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」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농림수산 업자의 신용을 보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("72년)
  - 설립이후 정부·금융기관 출연금, 보증료 등으로 총 10.2조원을
    조성\*하여 '17년말까지 총 123.9조원의 보증을 공급
    - \* 조성현황(조원): 정부 4.2, 금융기관 2.1, 보증료 0.9, 구상채권 회수금 등 3.0
- □ 농어가 부채부담 경감을 위한 「부채대책 특례보증\*」('98~'09년)으로 운용배수가 크게 상승하였으나, 정부출연 등으로 안정화
  - \* IMF 이후 부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기존 대출을 농신보 보증 대출로 대체하여 금리부담 경감 및 만기 연장 등 지원

#### < 최근 기금운용배수 추이>

(단위: 조원, %, 배)

구분	06	07	80	09	10	11	12	13	14	15	16	17
정부출연 <sup>*</sup>	0.6	0.7	0.7	0.9	0.1	-	-	-	△0.5	△0.1	△0.3	△0.3
대위변제율	6.8	6.9	4.9	3.5	3.5	2.1	1.4	1.4	1.3	1.4	1.2	1.6
운용배수	96.0	23.8	14.6	6.6	4.3	4.9	3.9	3.6	4.1	4.4	5.3	6.9

- ※「농어가 부채대책」등에 따라 1999~2010년간 약 5.1조원 정부 출연
- 부채대책 특례보증이 종료('09년)된 이후 **대위변제율도 1.2~1.6%** 수준으로 안정화
- □ 농어업 분야 **창업 활성화** 및 **첨단화·규모화·융복합화**에 맞춰 **농신보의 적극적 역할이** 요구되는 상황
  - 청년 농어업인 육성<sup>\*</sup>, 스마트 농어업 확산<sup>\*\*</sup> 등 **지속가능한 성장 기반**을 **마련**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
    - \* 청년 창업농 1,200명 선발. 청년 창업농 법인화 지원 등(농식품부)
    - \*\* 스마트팜 종합자금(1,000억원) 지원 등 스마트팜 창업 생태계 조성(농식품부)
  -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, 농어촌체험마을 등 **새로운 분야**에 대한 **지원 수요**도 **증가**

## Ⅱ. 농신보 보증 현황

## [1] 기금운용배수는 안정화되고 보증잔액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

- □ 보증잔액은 '11년 이후 증가하여 '17년말 기준 13.4조원
  - 기본재산은 정부출연 및 기금 안정화 등으로 증가하였으나, '14년부터 여유자금을 **농특회계**에 반환<sup>\*</sup>함에 따라 **감소** 
    - \* 기재부는 농특회계 자금부족으로 농신보 등의 여유자금을 회수
  - **운용배수**는 대위변제 감소 등으로 4배 수준까지 떨어졌으나 농특회계 반환 및 보증공급확대 등으로 '15년 이후 상승 추세

< 기본재산 및 보증잔액 등 추이>

(단위: 조원, 배)

구 분	01년	06년	11년	14년	15년	16년	17년
기본재산	1.2	0.2	1.8	2.5	2.5	2.3	1.9
반환규모				△0.5	△0.1	△0.3	△0.3
보증잔액	18.6	15.1	8.6	10.1	11.0	12.2	13.4
운용배수	16.2	96	4.9	4.1	4.4	5.3	6.9

## (2) 보증신청 건수는 점차 줄고 있으나, 건당 보증규모는 확대 추세

- □ 보증신청 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건당 보증금액은 점차 확대되어 '17년말 기준 2,800만원 수준
  - 농업의 규모화 등에 따라 **신규 보증의 경우**에는 건당 보증금액이 **평균보증 규모의 2배 수준**인 약 6천만원

< 기본재산 및 보증잔액 등 추이>

(단위: 만건, 조원, %, 건당보증규모 단위는 천만원)

구 분		2011년	2014년	2015년	2016년	2017년
전체	건수(비중)	60.9(100)	51.5(100)	50.0(100)	48.0(100)	47.8(100)
— "	금액(비중)	8.6(100)	10.1(100)	11.0(100)	12.2(100)	13.4(100)
보증	건당보증규모	1.4	2.0	2.2	2.5	2.8
신규	건수(비중)	5.0(8.2)	5.5(10.7)	5.6(11.3)	6.0(12.6)	5.9(12.3)
	금액(비중)	1.5(17.3)	2.6(25.8)	3.0(27.3)	3.5(28.6)	3.4(25.7)
보증	건당보증규모	2.9	4.8	5.3	5.8	5.9

## (3) 보증공급 대상은 농어업 분야의 개인 비중이 높음

- □ 농어업 분야 개인을 중심으로 보증이 공급되고 있지만, 농업의 법인화 추세에 따라 법인보증잔액이 증가하는 모습
  - \* 보증잔액 비중(개인/법인, %): (10년) 96.5/3.5, (13년) 91.5/8.5, (17년) 83.6/16.4
  - 특히, 신규보증(갱신포함)의 경우 법인 비중이 빠르게 증가
    - \* 신규보증금액 비중(개인/법인, %): (10년) 92.1/7.9, (13년) 87.0/13.0 (17년) 78.5/21.5
- □ 개인은 농업·어업 등 전통적인 농림수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공급
  - **법인의 경우 유통·가공** 등 농업의 산업화 및 부가가치를 높이는 **분야에 대한 보증공급 규모가 큼**

<개인·법인의 영위 업종별 비중('17년말, 기준)>

(단위:%)

¬ ы	-	농림수산업(A	)	O 트 기 코 어/D)	741 ( A + D )	
十군	농업	어업	소계	유동·가중입(B)	게(A+b)	
개인	72.6	22.6	95.2	4.8	100.0	
법인	17.5	2.4	19.9	80.1	100.0	

#### (4) 농어업의 대형화에도, 소액 보증 위주로 공급

- □ 5천만원이하 소액보증 비율은 점차 감소\*하고 있으나 **평균 보증** 규모\*\*는 여전히 **3천만원 이하**(2.8천만원)
  - \* 5천만원이하 보증비율(잔액기준, %): (10년) 85.1, (13년) 66.6, (17년) 41.7
  - \*\* 평균 보증금액(잔액기준, 천만원): (10년) 1.2, (13년) 1.6, (17년) 2.8
- □ 다만, 농어업의 대형화에 따라, **1억~5억원 구간을 중심으로** 보증 공급 비율이 **증가** 
  - \* 1억원  $\sim$  5억원 보증비율(잔액기준, %): (10년) 4.7, (13년) 14.1, (17년) 30.8
  - ▶ 안정적 운영 기조를 유지하면서 농어업 규모화·융복합화에 따른 보증수요 변화에 맞추어 보증공급 규모와 대상을 확대

## Ⅲ. 제도개선방안

#### \_ <기본방향> -

## 목표

## 농림수산업 분야 혁신성장

## 전략

## 농신보의 적극적 역할 강화

#### □ 창업지원 프로그램 개편

- ① 창업 활성화를 위한 일반적 창업보증프로그램 신설
- ② 창업 우대보증 프로그램 개선
- ③ 성실 실패자에 대한 재기지원제도 마련

## ② 新성장 분야에 대한 보증 확대

- ① 환경변화에 맞추어 농신보의 보증대상 확대
- ② 스마트팜 등 농어업 혁신분야에 대한 지원 강화

## ③ 농어가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

- ① 전액보증 한도 확대를 통한 소액자금 조달 원활화
- ② 필요자금 규모 확대에 맞추어 동일인 보증한도 확대
- ③ 보증료 체계 변경을 통한 보증료 부담 경감

## ④ 기금운영의 효율성 강화

- ① 농신보의 전문성 강화
- ② 경영컨설팅 기능 강화
- ③ 외부 기술평가 기관 확대를 통한 기술심사능력 강화
- ④ 예외보증 정비를 통한 보증지원의 효율성 제고

## 1 창업지원 프로그램 개편

## 1-1 창업 활성화를 위한 일반적 창업보증프로그램 신설

- □ (현행) 창업 관련, 지원대상이 매우 협소한 **우대보증 프로그램**\* 이외에 모든 농어민을 대상으로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부재
  - \* 신용심사 완화, 보증비율 상향, 보증료 경감 등의 혜택이 있으나 보증대상이 농어업 후계자, 귀농어자, 농어업 전문교육 이수자 등으로 한정
- □ (개선) 농림수산업 분야에서 창업이 활발히 일어나도록 촉진 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창업보증 프로그램을 신설
  - 농수산물 **생산·유통·가공** 관련 **창업자(법인포함)**에 대한 **보증** 비율을 **상향**(농어업 85→90%, 非농어업 80→85%)

## 1-2 창업 우대보증 프로그램 개선

□ (현행) 창업 우대보증 대상자가 농어업 후계자(40세 미만)·귀농 어자(45세 이하) 등으로 제한적이고 지원금액도 소액

<현행 창업 관련 우대보증 프로그램 개요>

보증 대상	조 건	보증한도	보증비율
농어업 후계자	• 40세 미만	2억 원	90%
농어업 전문교육 이수자	<ul><li>농어업계 고졸 또는 대졸</li><li>동종업계 3년 이상 근무</li><li>35세 이하</li></ul>	1.5억원	90%
청장년 귀농어자	- 45세 이하	1억원	90%

- \* 이외에 농어업 종사 다문화가족 지원 우대보증이 있음
- □ (개선) 창업 우대보증 지원대상을 확대하고, 보증비율과 보증 한도를 일괄 상향하여 청장년층 창업 지원을 강화

- 기존 3개 창업 관련 우대보증의 보증한도를 3억원으로 상향 하고 보증비율은 90 → 95%로 상향
- > 농어업 전문교육 이수자의 경우 전문교육이수 경력을 감안하여,
  업력요건\*을 폐지하고 연령제한도 완화(35세 이하 → 40세 미만)
  - \* 동종업계 3년 이상 근무
- 귀농어자 증가 추세에 맞추어 귀농어자 우대보증의 연령제한을
  완화 (45세 이하 → 55세 이하)
- 농식품부 등이 주관하는 **창업경진대회 입상자**(법인포함)를 위한 별도 **우대보증 프로그램**<sup>\*</sup> 신설
  - \* 보증한도 3억원, 보증비율 95% (유통·가공 등 비농어업인 90%)

## 1-3 성실 실패자에 대한 재기지원제도 마련

- □ (현행) 농림수산업 분야는 이상기후·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구상채무자가 된 경우가 많아 구제 필요성이 크나,
  - \* 구상채무자 수(천명): (05년) 69, (10년) 116, (15년) 118, (17년) 67 [17년 구상채무자수는 시효완성·면책 채권 소각(17.8월 51천명)으로 감소]
  - 성실 실패자가 실패 경험을 살릴 수 있게 지원하는 「**재기지원** 프로그램」이 부재
- □ (개선) 재기 가능성이 높은 성실실패자에 대해 채무를 감면(최대 75%)하고 신규 자금을 보증하는 「재기지원제도」 마련
  - 별도의 전문위원회<sup>\*</sup>를 설치하여 성실실패 여부를 판단하고, 재기 자금 지원 여부를 결정
    - \* (다중채무자) 신복위에 농신보 등이 참여하는 「농어업 재창업 지원 위원회」설치 (단독채무자) 농신보 내에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 전문위원회 설치

## 2 新성장 분야에 대한 보증 확대

## 2-1 환경변화에 맞추어 농신보의 보증대상 확대

- □ (현행) 농어업의 외연이 확대되고\*, 생산방식이 자동화·지능화 되는 등 농어업이 변화·혁신하고 있으나 환경변화 반영에 미흡
  - \* 실내 농작물 재배업, 곤충사육업, 농촌체험마을 확산 등 농어업 융복합화
  - ① 농어업인 정의규정이 조합원 자격을 정하는 농협법, 수협법을 준용하고 있어 농어업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함\*
    - \* 현행법상 곤충사육업자, 실내농작물 재배업자 등 신성장 분야에 대한 농신보 보증이 어려움
  - ② 보증대상이 **농림수산업자 등으로 한정되어**, 사회적 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수행하는 **농촌융복합산업<sup>\*</sup> 지원이 어려움** 
    - \* 해당 지역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식품 또는 가공품을 제조·판매 또는 체험·관광·외식 등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산업(농촌융복합산업법)
  - ③ 「농수산물 가공 중소기업」의 경우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1차 가공하는 경우에만 보증대상으로 인정
    - 농수산물가공품(쌀가루, 고춧가루, 건어물 등)을 원료로 하여 **2차** 가공하는 중소기업은 보증대상에서 제외
- □ (개선) 농림수산업 新성장 분야가 보증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농신보법상 「농림수산업자 등」정의를 유연하게 규정<sup>\*</sup>하고,
  - 농식품부가 인증하는 농촌융복합사업자, 농수산물 가공품을
    원료로 2차 가공하는 중소기업 등을 농신보 보증대상에 포함
    - \* 농어업인 준용규정을 조합원 자격을 규정하는 「농협법」, 「수협법」에서 산업종사자를 규정하는 「농업·농촌 식품산업기본법」 및 「수산업·어촌발전기본법」으로 변경

## 2-2 스마트팜 등 농어업 혁신분야에 대한 보증 지원 강화

- □ (현행) 스마트팜\* 등 농어업과 ICT·IoT 기술을 접목한 생산시설 도입 수요가 크게 증가
  - \* 시설 원예·과수·축사 등에 정보통신기술(ICT)이나 사물인터넷(IoT)을 접목하여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에 맞춰 적정 상태로 제어하는 지능화된 농장
  - 농식품부는 **스마트팜 금융지원 강화를 통해**「선도 프로젝트 기술개발 → 자본투자 → 일자리」선순환을 이루는 **혁신 생태계 조성을 추진 중** 
    - \* 스마트팜 보급목표(누적): ('17) 4,000ha → ('18) 4,510ha → ('22) 7,000ha
    - 대규모 투자자금이 소요\*되는 스마트팜 조성을 위해 농식품부· 해수부는 지자체와 연계(매칭) 등을 통한 지원 사업 마련

#### <스마트팜 관련 지원사업>

(**농식품부**)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사업, 농업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, 스마트팜 지원사업

(해 수 부) 스마트양식 지원사업

- 이에 따라 농신보는 보증한도를 대폭 높인 **스마트팜 예외보증** 프로그램을 운영<sup>\*</sup>하고 있으나, **스마트팜 조성에 부족한 측면** 
  - \* 예외보증 한도(억원): 개인 30. 법인 50 vs 일반보증 한도(억원): 개인 10. 법인 15
  - ※ 예외보증: 대규모 시설자금 등이 필요한 경우 보증한도를 별도로 정하는 제도 (현재 스마트팜, 첨단온실, 원양어선 현대화 등 12개 예외보증 운용)
- □ (개선) 대규모 투자자금이 소요되는 스마트팜 조성을 지원하기위해 보증한도를 확대 (법인 50억→70억원)
  - 스마트팜 사업자 중 농어업계 전문교육 이수자에 대해 보증 비율을 상향 지원 (85→90%)

## 3 농어가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

## 3-1 전액보증 한도 확대를 통한 소액 영농어자금 조달 원활화

- □ (현행) 영세 농어업인의 자금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소액자금(2천만원 이하)에 대해서는 전액보증
- □ (개선) 높은 상환율로 **안정적으로 운영**되고 있는 점<sup>\*</sup>을 고려하여 농신보가 전액보증하는 **소액자금 한도를 3천만원으로 상향** 
  - \* 대위변제율('17년말): 보증금액 3천만원 이하 0.5% / 전체평균 1.6%

## 3-2 필요자금 규모 확대에 맞추어 동일인 보증한도 확대

- □ (현행) 농신보의 동일인 보증한도(개인 10억, 법인 15억)가 작아 농어업의 규모화\*, 융복합화 등의 변화를 반영하는데 한계
  - \* 농업법인 추이: (05년) 2,180개 → (10년) 7,009개 → (16년) 14,361개
  - 농어업 환경변화로 투자비용·영농비용이 증가하면서 보증한도 소진자의 비중<sup>\*</sup>이 증가
    - \* 보증한도 소진자 (법인): (11년) **2.9%** → (16년) **5.2%**
  - 농어업 현장의 애로사항 조사에서 **동일인 보증한도 확대**에 대한 **요구가 가장 높은 상황** 
    - \* 16년 농신보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보증한도 문제가 불만족 사유 1위(15.6%)
- □ (개선)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동일인 보증한도를 현실화하되 보증심사 시스템을 고도화
  - 개인의 경우 10→15억원으로, 법인은 15→20억원으로 확대
  - 비계량 심사항목 계량화, 사업성 평가방법 세분화 등 **신용평가** 모형을 고도화

## 3-3 보증료 체계 변경을 통한 보증료 부담 경감

- □ (현행) 농신보 보증료율은 개인·법인 등 보증대상과 보증금액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\*을 두어 적용
  - \* 보증금액 1억 이하, 1~5억, 5억 초과의 3단계를 기준으로 개인 0.3%~0.9%, 법인 0.5%~1.2%의 보증료율 적용
  - 농어업 대형화에 따른 **보증규모 증가** 등으로 **보증료체계 개선에 대한 요구** 증가
- □ (개선) 보증료 할증구간을 조정하여 보증료 비용부담 경감
  - ※ 농신보 평균 보증료(약 0.5%)가 신·기보의 평균 보증료(약 1.3%)에 비해 낮은 상황에서 일률적 보증료 인하는 기금부실화 초래 가능(2016 농촌경제연구원)
  - $\circ$  개인의 경우 보증료 할증구간을 1,  $5\rightarrow 2$ , 7 억원으로 조정하고
  - 법인은 할증구간을 1, 5→2, 7, 10 억원으로 세분화
    - \* 보증료 체계 개편으로 약40억원의 보증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추정 ('17년 보증료 수입 604억원 기준, 약 7% 수준의 보증료 부담 경감)

<참고: 농신보 기준 보증료율\* 체계 개선안>

	현	행			
구분		분야			
	보증금액	농림 어업	유통· 가공 등		
	<b>1</b> 억원 이하	0.3	0.4		
개인	<b>1~5</b> 억원	0.4	0.6		
	5억원 초과	0.6	0.9		
	<b>1</b> 억원 이하	0.5	0.8		
법인	<b>1~5</b> 억원	0.7	1.0		
	<b>5</b> 억원 초과	1.0	1.2		

		개 선(안)							
	구분		분야						
		보증금액	용업 상	유통· 가공 등					
		<b>2</b> 억원 이하	0.3	0.4					
١	개인	<b>2~7</b> 억원	0.4	0.6					
		<b>7</b> 억원 초과	0.6	0.9					
		<b>2</b> 억원 이하	0.5	8.0					
	법인	<b>2~7</b> 억원	0.7	1.0					
	ᆸ긴	<b>7~10</b> 억원	0.9	1.1					
		<b>10</b> 억원 초과	1.0	1.2					

\* 기준 보증료에 신용도를 가감하여 실제 보증료율을 산출

## 4 기금운영의 효율성 강화

## 4-1 농신보의 전문성 강화

- □ (현행) 소액 다건의 농어업 분야 금융 수요를 담당하기 위해 농협중앙회가 농신보를 위탁하여 관리·운영
  - 농신보-농협중앙회간 **순환보직**(평균 근무기간 3.5년) 등에 따라 기금운영의 전문성 확보 곤란
  - 농업중심 인력 구성으로 인해 **수산업무에** 대한 **전문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** 
    - \* '17년말 총 356명 중 농협 303명(85%) / 수협 18명(5%) / 계약직 등 35명(10%)
- □ (개선) 농신보 인력 운용의 전문성과 균형성을 제고
  - 의무근무기간 제도(예: 5년)를 도입하고, 수산업 관련 인력 확대
    (5%→10% 이상) 및 전문팀 구성·운영
    - \* 수협직원 운용 계획: (17년) 18명  $\rightarrow$  (18년) 23명  $\rightarrow$  (19년) 38명
  - 변호사 등 **전문직 채용 확대**,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전문성 제고
    - \* 전문계약직 운용 계획: (17년) 1명 → (18년) 8명 → (19년 이후) 15명 이상

#### 4-2 경영컨설팅 기능 강화

- □ (현행) 농어업 경영의 규모화·융복합화, 귀농 확대\* 등에 따라 성공적인 창업과 효율적인 경영을 위한 컨설팅 수요 증가
  - \* 귀농: ('11) 10,075가구 (17,464명) → ('16) 12,875 가구 (20,559명)
- □ (개선) 전문인력 충원 등을 통해 귀농어자 등 농어업 경영자에 대한 경영컨설팅 지원 확대
  - 농신보내 **농어업 경영지원 전문인력을 충원**(2~3명)하고 **농협** 은행의 전문컨설팅인력(약 25명)을 활용하여 지원 확대<sup>\*</sup> 추진
    - \* 컨설팅 대상자: (현행) 보증금액 5억원 이상 → (개선) 3억원 이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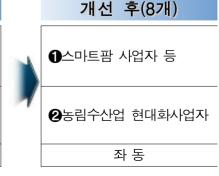
## 4-3 외부 기술평가 기관 확대를 통한 기술심사능력 강화

- □ (현행) 농신보는 외부 기술평가 기관을 지정하여 기술성 심사를 강화한「우수기술자 신용보증」제도를 운영
  - **농업기술실용화재단**의 기술평가를 통해 **우수기술을 보유**한 것 으로 인증된 자에 대해 **보증조건을 우대**\*
    - \* ① 사업성평가에 가점부여(보증한도 상향 효과), ② 보증료율 우대(0.2%p) 등
  - 농업기술외에도 **수산기술** 및 농수산물 **유통·가공 전반**으로 **기술심사능력을 강화**할 필요
- □ (개선) 기술신용평가기관(TCB\*)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(KIMST)을 외부 기술평가 인증기관으로 추가 지정

## 4-4 예외보증 정비를 통한 보증지원의 효율성 제고

- □ (현행) 농신보는 스마트팜 등 정부정책자금이 원활히 집행될 수있도록 정책자금과 연계된 예외보증제도를 운영
  - 농수산업 **정책자금 대상**별로 **보증프로그램을 마련**하여 **유사한** 성격의 **예외보증 프로그램**이 복잡하게 **혼재** 
    - \* 농림수산업의 대형화·규모화·첨단화 등에 따라 '11년 이후 정책사업별로 9개 신설
- □ (개선) 유사한 성격의 예외보증을 통합하여 단순화
  - 예외보증을 **14개 → 8개로 통합하고 보증비율도 85%로 통일**\*
    - \* 현재 노후어선현대화, 수출 규모화 사업은 80%, 나머지는 85%

현행(14개)	
①첨단온실 신축사업, ②스마트팜종합자금 ③수출전문스마트팜 온실신축사업(예정) ④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(예정)	4개
⑤축사시설 ⑥양식시설현대화사업 ⑦노후어선현대화사업 (80% 보증) ⑧원양어선현대화사업	4개
⑨수출 및 규모화 사업(80% 보증) 등 6개사업	6개



## Ⅳ. 기대 효과

- □ 농어업 창업 활성화, 융복합산업 지원 등 제도개선 효과가 모두 반영되는 '21년부터 보증잔액이 7,7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
  - \* 제도개선에 따른 보증잔액 순증가액 추정(추세증가분 제외, 억원): (18년) 1,363 (19년) 3,985 (20년) 6,526 (21년~) 7,682

< 추가 보증공급 규모 추정\* >

(단위: 억원)

구 분	보증 증가액
1. 창업지원 프로그램 개편	4,072
① 창업활성화를 위한 일반적 창업보증프로그램 신설	2,078
② 창업지원 우대보증 프로그램 개선	1,944
③ 성실실패자에 대한 재기지원제도 마련	50
2. 新성장 분야에 대한 보증 확대	2,880
① 환경변화에 맞추어 농신보의 보증대상 확대	2,772
② 스마트팜 등 농어업 혁신분야에 대한 보증지원 강화	108
3. 농어가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	570
① 전액보증 한도 확대를 통한 소액 영농어자금 조달 원활화	388
② 필요 자금규모 확대에 맞추어 동일인 보증한도 확대	182
4. 기금운영의 효율성 강화	160
① 기술평가 기관 확대를 통한 기술기업에 대한 보증 강화	160
총 보증 추가 증가액	7,682

※ 제도 개선 효과가 전부 반영된 시점('21년 이후) 기준

## Ⅴ. 추진 계획

- □ 창업우대보증 개선 등 **농신보 규정 개정은 3월말 기완료**\*
  - \* 최대한 빠르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농신보 규정 개정절차를 미리 진행
- □ 법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은 신속하게 개정을 추진

## 참고

## **농신보·신보·기보 비교** ('17년말 기준)

7	분	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	신용보증기금	기술보증기금		
법적근거		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법 (제정 : '71. 1.13)	신용보증기금법 (제정 : '74.12.21)	기술보증기금법 (제정 : '86.12.26)		
설립	빌일자	′72. 3. 20	′76. 6. 1.	′89. 4. 1.		
주요 지원대상		농어업인 농어업회사법인 등	창업·수출 중소기업 등	혁신형 중소기업		
지원자금		영세 농어민 영농자금 등	창업자금, 시설자금, 신성장 자금 등			
보증한도		개인 10억원 법인 15억원 *예외보증 최대 50억원	30억원 * 예외보증(시설자금 등) 최대 100억원			
보증	5료율	0.3~1.2%	0.5~3.0%			
보증	등비율	80~100%	50~100%			
	선당 보증액	2,800만원	1.6억원	1.9억원		
보증	금액	13.4조원	44.4조원	21.3조원		
잔액	건수	47.8만건	27.9만건	11.3만건		
기본	르재산	1.9조원	4.4조원	2.0조원		
운용	용배수	6.9배	10.1배	11.6배		